

창원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56425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5642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가단10641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즈, 담당변호사 최세학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경

변론 종결 2022. 3. 31.

판결 선고 2022. 5. 12.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가단106414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김해시 D 대 13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인도하라.

나. 피고는,

- 1)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2) 원고 A에게 2020. 4. 7.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연 666,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3) 원고 B에게 2020. 4. 7.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연 3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2쪽 제21행의 '1972. 2. 5. 매매를 원인으로 1979. 12. 7.'을 '1972.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9. 12. 17.'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행의 'T'를 'I'의'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1997. 9. 23. 공매를 원인으로'를 '1997. 8. 8.자 공매를 원인으로 1997. 9. 23.'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3쪽 제9행, 제16행의 '원고 B'를 'J'로 각 고친다.

마.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1행부터 제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J는 2018. 1. 3.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J의 2/3 소유지분은 2018. 1.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2. 2. 15.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 내지 4, 10호증'으로 고친다.

사. 제1심판결문 제5쪽 제7행의 '증인 M'을 '제1심 증인 N'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홍득관

판사윤정

판사이큰가람

별지